

2024년 3월말 기준 사업보고서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3월 31일 까지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제107조,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2024년 4월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전형숙

목 차

I.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3. 정관변경 사항

II.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유통)사업

3. 신용(금융)사업

III. 주요사업 추진 실적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I.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4.02.23	67	제1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2안 : 2023년도 결산보고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3안 : 배당금 지급 방법 결정 승인의 건 제4안 : 사업계획변경 및 업무용고정자산 취득 승인의 건 제5안 : 기타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4.01.26	13	제1안 : 신규조합원 가입 승인의 건 제2안 : 외상매출금 개인별 한도약정 승인의 건 제3안 : 우선출자 임의소각 승인의 건 제4안 : 차입금 최고한도 책정 승인의 건 제5안 : 경제사업 수수료율 책정 승인의 건 제6안 : 안동축산물공판장 외상매출금 무입보 약정한도 책정 승인의 건 제7안 : 기타 ①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2024.02.06	13	제1안 : 신규조합원 가입승인의 건 제2안 : 외상매출금 개인별 한도약정 승인의 건 제3안 : 우선출자 임의소각 승인의 건 제4안 : 잉여금 배당 방법 결정 승인의 건 제5안 : 2023년도 결산보고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6안 : 배당금 지급방법 결정 승인의 건 제7안 : 사업계획변경 및 업무용고정자산 취득 승인의 건 제8안 : 기타
2024.03.14	13	제1안 : 신규조합원 가입 승인의 건 제2안 : 외상매출금 개인별 한도책정 승인의 건 제3안 : 조합원 탈퇴 및 지분 선 지급 승인의 건 제4안 : 우선출자 임의소각 승인의 건 제5안 : 조합장상임이사 직무대행이사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안 :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안) 수립 승인의 건 제7안 : 성과급 차등지급 승인의 건 제8안 : 간부직원 임면 승인의 건 제9안 : 안동축산물공판장 외상매출금 무입보 약정한도 책정 승인의 건(간접의안) 제10안 : 기타 ①2023년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고 ②2023년도 자기위험평가 결과 보고서 보고 ③2024년도 안동봉화축협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보고 ④2023년 자금세탁 방지업무 이행 현황 보고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구 분		'23년말 (A)	'24년 3월말 (B)	증감 (B-A)	비 고
사 무 소 수	본 점	1	1		
	지 점	6	6		
	사업소	2	2		하나로마트 안동축산물공판장
	기 타	3	3		일직사업소 봉화한약우프라자 생균제공장
	계	12개소	12개소		

나. 인원 현황

구 분			'23년말 (A)	'24년 3월말 (B)	증감 (B-A)	비 고
인 원	인 원	조합장	1	1		
		이 사	10	10		
		상임이사	1	1		
		사외이사	1	1		
		감 사	2	2		
		계	15	15		
직 원	정규직	책임자	16	18	2	
		직 원	96	95	▲1	
	비정규직	계약직	46	52	6	
계			158	165	7	

3. 정관변경 사항

현 행	개 정	비 고
제37조제1항제8호 나목 중,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u>5억원</u>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u>5억원</u>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항제8호 나목 중,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u>10억원</u>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u>10억원</u>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구 분	2024년 계획(A)	3월말 실적(B)	집행률(B/A)
영농지원사업비	833,500	333,401	40.00
영농지도사업비	1,497,515	166,304	11.11
생활지도사업비	3,000	0	0.00
교육사업비	18,000	9,646	53.59
홍보선전사업비	229,220	31,915	13.92
조사연구사업비	1,000	0	0.00
복지지원사업비	82,800	1,500	1.81
계	2,665,035	542,766	20.37

2. 경제(유통)사업

- ▣ 경제사업 총매출실적은 88,325백만원으로 사업계획 대비 25.88%달성
전년 동기 53,088백만원 대비 66.38% 성장하였음.
- 구매사업은 13,455백만원으로 전년동기 14,688백만원 대비 ▲8.40%성장
 - 판매사업은 55,952백만원으로 전년동기 25,462백만원 대비 119.75%성장
 - 마트사업은 10,094백만원으로 전년동기 9,283백만원 대비 8.73%성장
 - 가공사업은 89백만원으로 전년동기 100백만원 대비 ▲10.50% 성장
 - 생장물자산은 4,810백만원으로 전년동기 1,785백만원 대비 169.39%성장
 - 이용사업은 3,064백만원으로 전년동기 1,649백만원 대비 85.87%성장
 - 수수료사업은 779백만원으로 전년동기 69백만원 대비 1034.49%성장
 - 기타사업은 82백만원으로 전년동기 52백만원 대비 58.40%성장

3. 신용(금융)사업

- 예수금 평잔은 401,435백만원으로 사업계획대비 96.56%
상호대출금 평잔은 234,047백만원으로 사업계획대비 98.03%
달성하였음.

- 예수금 평잔 대비 상호금융대출비율인 예대비율은 58.30%로
전년말 63.76% 대비 5.46%p 감소

- 예수금이자율 대비 상호금융대출이자율인 예대마진율은 2.63%로
전년말 2.33% 대비 0.30%p 증가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4년 3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증 감	성장률	
경제사업	341,301	88,325	25.88	53,088	35,237	66.38	
구 매	62,326	13,455	21.59	14,688	▲1,233	▲8.40	
판 매	205,690	55,952	27.20	25,462	30,490	119.75	
마 트	39,526	10,094	25.54	9,283	811	8.73	
가 공	596	89	15.03	100	▲11	▲10.50	
생장물	11,344	4,810	42.40	1,785	3,025	169.39	
이 용	16,614	3,064	18.44	1,649	1,415	85.87	
수수료	5,003	779	15.57	69	710	1034.49	
기 타	202	82	40.48	52	30	58.40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426,942	397,923	93.20	370,095	27,828	7.52
	평잔	415,738	401,435	96.56	370,098	31,337	8.47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246,229	231,442	93.99	246,361	▲14,919	▲6.06
	평잔	238,744	234,047	98.03	250,741	▲16,694	▲6.66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유동자산	29,163	I. 유동부채	35,995
현금	2,683	외상매입금	1,165
외상매출금	5,363	단기차입금	18,185
재고, 생물자산	13,318	기타유동부채	16,645
기타유동자산	7,799	II. 금융업예수금	397,923
II. 금융업예치금	115,983	III. 금융업차입금	117,889
III. 금융업대출채권*	342,076	IV.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IV.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	V. 비유동부채	13,825
V. 비유동자산	125,643	장기차입금	11,000
투자자산	13,556	기타비유동부채	2,825
유형자산	110,357	부채 합계	565,632
무형자산	487	I. 출자금	31,980
기타비유동자산	1,243	II. 자본잉여금	2,996
		III. 자본조정	▲1,307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익잉여금	13,564
		자본 합계	47,233
자산 총계	612,865	부채와 자본 총계	612,865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3월말 (A)	'24년 3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31,844	36,995	5,151
영업비용	25,645	29,089	3,444
매출총이익	6,199	7,906	1,707
신용사업	1,664	1,694	30
경제사업	4,535	6,212	1,677
판매비와관리비	5,387	8,367	2,980
영업손익	812	▲461	▲1,273
교육지원사업준비	217	538	321
영업외손익	97	▲60	▲157
법인세차감전손익	692	▲1,059	▲1,751
법인세비용	-	-	
당기순손익	692	▲1,059	▲1,751

예상치 못한 화재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축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정부지원

50%

최대 5천만원 한도

지자체지원

00%

*00시군 기준
*농가당 00만원 한도

예산한도내 선착순 지원

총

00%지원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 1.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4.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에 마음을 더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

준법심의필 : 202401-030 (유효기간 : 1년 또는 개정 시까지)
제작 : 농축협사업부(2024.01)

농업드드드플랜

농업인만 가입가능

농번기
농기계 사고
급증!

논두렁 태우다 화재?
농사짓다 남에게 피해?

하루 한 건꼴
농기계 사고!

농기계사고 경운기가 절반, 60세 이상에서 67% 발생!!

(농촌진흥청, '19년)

농번기 전 꼭 가입하세요!!

농기계사고부상치료비

- 경운기 손잡이 충격
- 콤바인 벼 작업 중 사고
- 예취기 작업 중 파편 타격

농기계사고 부상 시 치료비

**최소 10만원~
최대 1천만원** 지급!

※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차등지급

승용형농기계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승용형 농기계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비용 보장

형사합의지원금	벌금액
최대 3천만원 지급!	최대 2천만원 지급!

농작업중배상책임

- 농작을 위해 논 태우다 산불
- 건조기 누전으로 인근 화재

농작업중 사고로 배상책임 (농기계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

발생 시 1사고당
최대 5천만원 지급!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대인, 대물 합산 20만원

(해당특약 가입 시)

1. 본 상품 가입 전 직권과 충분한 상담하시고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한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종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상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의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가 가중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 상당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맹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회회사 (☎ 1644-9000) / 홈페이지(www.nhife.co.kr) > 전자민원상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지리관리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 www.fss.or.kr에 방문 또는 행정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6.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 증권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통단 중 전화통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 및 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7.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서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 실체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동계약보통)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10. 위서는 계약의 청약을 속박하고 제외 보령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비에 따라 보령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외 보령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외 보령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비에 따라 보령을 합니다.

준법심의필 · 202404-045(유효기간 1년 또는 계약 시까지) 제작 : 농축협사법부(2024.04.)